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74 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 김주영·허성무·임호선

이용우 • 백승아 • 문정복

이기헌 • 천하람 • 한정애

박상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인 자녀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올해 3분기 구직활동 없이 '쉬었음'으로 답한 청년층의 비경 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25.4% 증가하고, 이런 경제불황 속에서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제 부모가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부양하는 경우 많아 현실에 맞는 자녀공제의 기준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기본공제 중 '20세 이하' 자녀를 '23세 이하'로 상향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"20세"를 각각 "23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기본공제) ① 종합소득이	제50조(기본공제) ①
있는 거주자(자연인만 해당한	
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	
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	
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	
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	
에서 공제한다.	
1.・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거주자(그 배우자를 포함한	3
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와	
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	
양가족(제51조제1항제2호의	
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	
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	
다)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	
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	
이하인 사람(총급여액 500만	
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	
부양가족을 포함한다)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	나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(이하 "입양자"라 한다)로서 20세 이하(20세가 되는 날과 그이전 기간을 발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인 사람.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.

다. ~ 마. (생 략)

②・③ (생 략)

<u>23세</u>
<u>23</u> <u> </u>
<u>.</u>
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